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 年 6 月 日

文教社會委員會

專門委員 金 鎮 鎬



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 檢 討 報 告 書

1994. 6. .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大田直轄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檢 討 報 告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5月 31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4年 6月 4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 . 都市計劃法 第83條에 依據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1993. 1. 16 무상 귀속된 대전직할시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 문예 공원”을 公園管理事務所長이 管理하도록 하고
- . 그 동안 市長이 處理하던 사무중 公園管理事務所長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業務推進의 效率性을 제고하고 住民便宜를 圖謀할수있는 事務를 公園管理事務所에 分장하여 公園管理事務所長이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 2. 主 要 骨 子

- 가. “둔산문예공원”을 公園管理事務所長이 管理하는 대상공원으로 追加하고자 함 (案 第2條 第2項, 별표)
- 나. 公園管理事務所 業務中 一部를 調整하고 “公園施設의 管理 및 安全措置事項 指導監督” 등의 業務를 新設하고자 함. (案 第3條)

다. 公園內 體育施設 利用시 適用하고 있는 使用料 徵收條例를 “大田直轄市 體育施設管理 運營條例”에서 “大田直轄市 公園條例”로 變更하고자 함. (案 第6條)

### 3. 檢 計 意 見

○. 이 改正條例案은 둔산 신도시 조성에 따라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무상귀속된 “둔산 문예공원”에 대한 管理事項의 規定과 公園管理業務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公園管理事務所長의 業務分掌 規定을 一部 調整키 위한 것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둔산 문예공원”은 지난 '93년 1월 16일 都市計劃法第83條의 規定에 따라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무상귀속된 公園으로써 總 面積 196,000여평에 조경 및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등을 고루 갖춘 대규모 都市近隣公園으로 造成중에 있으며 본 공원에 대한 效率的인 維持, 管理를 위하여 公園管理專擔部署인 公園管理事業所長으로 하여금 維持, 管理케 한다는 内容이 되겠으며

둘째, 公園管理事務所長의 業務分掌 調整內容을 報告드리면 從前 公園管理事務所長은 公園의 維持, 管理에 관한 施設 管理및 樹木植栽등 一般的인 事項만을 擔當토록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公園의 占用및 施設物의 使用許可, 公園內 各種 法令違反者에 대한 처분등 公園管理에 必要한 行政的인 事項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擴大調整코자 하는 内容이 되겠음. 이는 特定業務만을 전담키 위하여 設置되는 事業所 設置目的과 附合되는 内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料되나 다만 本條例 改正에 따라 增加된 業務를 效率的으로 추진키 위하여는 人力增員등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 以上에서와 같이 本 「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 中改正條例案」은 新設公園에 대한 管理事項과 公園管理事務 所長의 業務分掌 調整이 그 主要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料됨.

## 議案検討報告書

1. 発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添參照
4. 檢 討 意 見 : 別添參照

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 年 6 月 日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

## 檢 討 報 告 書

1994. 6. .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6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 되어 1994年 6月 20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都市公園法改正('93. 8. 5法律 第4571號)에 맞추어 綠地의 占用許可對象의 擴大와 對民行政의 便宜圖謀 및 行政能率의 向上을 為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綠地의 占用許可中 地上에 設置할 수 있는 것은 進入道路뿐이었으나 그 範圍를 具體的으로 擴大 調整 (案 第3條)
- 나. 公園施設의 安定性을 圖謀하기 為하여 定期點檢等 必要한 措置를 취하도록 規定 (案 第6條의 2)
- 다. 公園施設中 運動施設을 使用할 境遇 使用料賦課徵收에 對하여 大田直轄市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에 준하여 徵收토록 規定코 자함. (案 第12條 第2項)

- 라. 公園施設中 教養施設(圖書館)의 新設로 因하여 教養施設 使用料, 管理委託料의 徵收 規定을 明確히 하고자 함 (案 第12條 第3項)
- 마. 公園등의 占用 · 使用料 徵收및 公園管理事務에 所要되는 經費 를 보전하기 위해 당해 구청장에게 收入金額의 100분의 30을 교부 (案 第12條 第4項)
- 바. 公園 占 · 使用料 減免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公用, 公共用 또는 公益으로 使用할 때는 占 · 使用料를 免除하고, 기타 공익사업은 占用料의 2분의 1을 減免 (案 第14條)
- 사. 施設綠地 占用許可申請書 및 허가증 서식을 本 條例에서 削除하고 本 條例 施行規則에 新設 施行코져 함 (案 第15條의 3)
- 아. 公園 및 公園施設 使用料 및 관리위탁료의 種別에 教養施設을 삽입코자 함 (案 별표 2, 3)
- 자.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및 公園施設의 인 · 허가와 委託手數料의 요율을 合理的으로 調整 (案 별표5)

### 3. 檢 討 意 見

○ 이 改正 條例案은 지난 '93년 8월과 9월에 關聯 上位法인 「都市公園法」과 同法施行令이 각각 改正됨에 따라 이에 맞춰 綠地에서의 占用許可 事項등을 一部 완화키 위한 것으로써 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다음과 같음

첫째, 綠地의 占用許可에 관한 事項으로써 綠地地域은 市民의 保健衛生과 公害防止, 其他都市의 무질서한擴散防止등을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 17條의 規定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것으로써 동指定目的의 充實한 履行을 위하여 綠地地域내에서의 각종 行爲 또 한 엄격히 제한되어 왔음.

그러나 동 地域안에 거주하는 住民들의 生活不便등 많은 民願들이 제기됨에 따라 政府에서는 지난 '93년 12월 27일 都市公園法施行令의 改正을 통하여 上地의 形質變更, 土石의 採取, 竹木의 伐採 및 栽植, 既存 建築物 및 既存 工作物의 改築·再築 또는 大修繕등의 行爲를 할 수 있도록 一部改正한바 있음.

따라서 大田直轄市의 都市公園 및 綠地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本 條例의 內容에 이에 관한 條項을 追加코자 하는 內容으로써 本 案件 第3條 第1項 第5號가 여기에 該當되겠음.

둘째, 公園施設中 運動施設의 使用許可 및 使用料 徵收에 관한 事項을 一部 調整코자 하는 內容으로써 運動施設의 使用은 體育에 공할 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하며 使用料는 “大田直轄市 體育施設管理 運營條例”에서 정한 基準에 준하여 賦課·徵收토록 하고 있음. 이는 第75回 全國體育大會를 對備하여 公園地域내에 新設된 사이클 경기장, 승마장등의 效率的인 使用料 徵收를 위한 것으로 判斷되며

기타 公園施設의 使用料 및 委託 手數料, 占用料 徵收에 관한 業務를 區廳長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그 徵收한 金額의 100분의 30에 該當하는 金額을 徵收 交付金으로 交付토록 하였는바 이는 “地方財政法” 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產管理條例”에서 정한 交付率의 例에 따른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料思됨.

셋째, 本 條例에서 使用되고 있는 用語整備 및 手數料 引上에  
관한 事項으로써

綠地의 占用에 관한 事項이 지난 '90년 9월 15일 都市公園法 施行令에 新設됨에 따라 本 條例에 綠地에 관한 事項을 追加 (第3條, 第15條의 2등) 하였으며 使用用語中 “비행정청”을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 “受許可者”를 “許可를 받은 者”등으로 表記하므로써 그 意味를 보다 더 明確히 하도록 하였음.

其地 公園 및 綠地關聯 各種 인·허가시 징수케 되는 手數料를一部 引上코자 하는바 이는 從前의 手數料가 지난 1987년 策定된 金額으로 現實에 맞지 않아 그간의 物價上昇등을 考慮 原價分析 등을 통한 手數料 徵收의 現실화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以上에서와 같이 本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關聯上位法인 「都市公園法」 등의 改正에 따라 綠地地域內에서의 占用許可基準緩和등이 그 主要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되나 公園地域 또는 綠地地域내에 居住하고 있는 住民들의 生活不便에 따른 強度높은 民願提起등을勘案할 때 이들 居住民들이 최소한의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方案등이 持續的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